

Ⅲ.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설치근거)	명	설치 년도	2007 계 획 안	2006 예 산 액	증 감	증감률 (%)
계 (14개 기금)			255,509,146	297,208,969	△31,699,823	△10.7
통합관리기금(예산담당관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05	9,685,607	0	9,685,607	-
지방채상환기금(예산담당관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04	1,055,607	526,833	528,774	100
투자진흥기금(투자유치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06	3,000,000	0	3,000,000	-
여성발전기금(여성정책과)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98	3,858,936	3,084,486	774,450	25.1
기초생활보장기금(복지정책과) 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00	1,883,657	2,105,652	△221,995	△10.5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01	16,964,264	15,307,426	1,656,838	10.8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89	9,819,383	8,367,605	1,451,778	17.3
환경보전기금(환경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06	3,531,753	0	3,531,753	-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충북과학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98	289,177	285,018	4,159	1.58
중소기업육성기금(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4	182,037,027	237,948,678	△55,911,651	△23.5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농업기술원)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6	3,735,888	3,470,429	265,459	7.6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정책과)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86	13,145,999	12,039,827	1,106,172	9.9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아동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0	462,650	249,970	212,680	85.1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05	16,039,198	13,823,045	2,216,153	16.0

○ 2007년도 설치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이었으나
투자진흥기금이 신설되었음.

2.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 우리 지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3,000,000	0	3,000,000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3,000,000	0	3,000,000	
	전입금	3,000,000	0	3,000,000	

- 임시적세외수입은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내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금 재원조성을 위해
도비 출연금이 계상된 것임.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3,000,000	0	3,000,000	
투자유치 활동	예비비 등	3,000,000	0	3,000,000	
	예치금	3,000,000	0	3,000,000	

- 예비비등의 경비에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금 조성 등을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된 것임.

IV. 검토의견

제2회 추경예산의 검토는 관련규정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예산사업의 합법성·타당성·합목적성·효과성, 경비부담의 합리성·경제성·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1. 일반회계

□ 세입예산

제2회추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인상 효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초과징수 예상액이 반영된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세수추계라고 판단되며 금년도 하반기 세수추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 사용료수입이 크게 감액 되었는데, 이는 청남대 입장료가 감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수입(관람객 유치)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교부세는 2006회계연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분, 지방도 확포장,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비가 계상되었음.
- 보조금은 중앙부처 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조정하고 수해복구사업,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농업육성, 보건의료 지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 계상 되었음.
- 지방채는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면적 축소(당초 377천㎡ → 변경

302천㎡)에 따른 부지매입 용자금 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세출예산

-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보조금,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수해복구사업, 경제특별도 건설 기반시설비, 추가변경조정이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예측가능예산 및 법정의무적 경비의 당초예산 미반영, 예산과목 경정으로 인한 사업지연, 과도한 예산계상
- 세부적인 산출기초 없는 연구용역비 계상, 지원근거가 불분명한 사회단체 예산지원
- 투자재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의 시기성 검토부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기능별로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 ▶ 일반행정부 8,921백만원 증액(17.7%),
- ▶ 사회개발비 175백만원 감액(△0.3%),
- ▶ 경제개발비 34,916백만원 증액(69.3%),
- ▶ 민방위비 70백만원 증액(0.1%),
- ▶ 지원 및 기타경비가 6,661백만원 증액(13.2%) 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었다고 판단됨.

-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도의회운영 및 선거관리업무 등을 위한 경비로 11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교육감선거 관련 경비가 계상 된 것으로

교육감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일반행정비**는 도정시책 홍보, 생산적 도정감시활동,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운영을 위한 기본적경비와 교육재정 지원 경비로 8,80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재정교부금,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계상된 것이며

법정의무적경비는 소요액을 세밀하게 측정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임.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재단출연은 의무사항인지, 재단근무 직원 시도에서 파견여부, 운영비 매년 출연 여부, 향후 활용계획
 -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개국 이후 운영결과를 본 후 용역실시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용역비에 대한 인건비 등 산출 내역, 용역기관 선정 등 금년내 사업완료 가능 여부
 -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 마이징 사업비 55%가 감액된 사유, 시스템 시험 가동 결과, 예산집행 시기
 - 직원 영유아 보육비지원기준(법정 최저 지급기준 지급) 관련규정 변경시기, 직원 복지향상 및 저출산 대책을 위해 상향 지급 여부
 -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근거, 시도별 출연금 내역, 출신 지별 장학금 지급계획, 당초예산 미계상 사유
- **교육및문화비**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및 체육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경비로 1,37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이는 청소년의 전통예절교육을 위한 향교연수원 건립,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비 등이 계상된 것임.

- 우수선수 종목별 영입대상은 선수 모두가 우리 도내 선수인지,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 환경관리 기반구축 및 자연환경보전,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위한 경비로 6,31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금년 6월부터 국비 전액을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어 감액되었고,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분뇨처리시설 개선, 농촌보건 의료서비스 개선,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편입토지 보상 사업은 증액 계상된 것임.
- 의료원 공공프로그램사업의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
- 농약빈병 수거보상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예산집행 여부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성과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보장비**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의료급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경비로 2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령연금업무 추진, 모부자 복지시설 기능보강, 긴급복지 지원 등의 경비는 증액되었으나

행자부의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과 유사한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사업 및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입양아동양육 수당 지원 등의

사업비는 감액되었음.

- 사회복지사 연찬회 개최 시기는 사회복지사 업무가 많은 시기인데 개최시기 타당 여부, 연찬회 지원단체 및 경비 산출 내역
- 도민복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기와 사업추진 보류 통보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사업추진이 보류인지 취소인지 여부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은 도관리(위탁)시설에 대한 지원분에 대하여 과목경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수당 지급 여부
-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예산과목 경정 사유 및 사업기간이 '07. 6 ~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인건비 및 활동비 지급 여부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주거환경개선, 주민 숙원사업 해결, 효율적인 지적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4,79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정비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수산개발비**는 농촌의 복지여건 개선, 고품질·친환경 농업육성, 생산·유통선진화, 축·수산업 경영안전 등을 위한 경비로 6,34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혁신역량 종합평가 최우수사업단 인센티브 사업비, 고추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비 등이 계상 되었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우수농촌마을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명 함을 일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인지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재원별 기준보조율은 국비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로 되어있으나 예산계상은 국비보조 30.3%, 지방비 27.1%, 융자 42.6%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필요함
- **지역경제개발비**는 경제특별도 기반강화, 기업투자 유치,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4,55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우수기업 유치 및 테크노파크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GMP시설 구축,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었음.
-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도가 지정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용역비 산출내역
- 우리도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내역, 재단활용 내용 및 실적, 시도별 출연금 배정내역, 재단운영의 필요성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면적 축소 사유와 사업축소로 인하여 해외 바이오 유망기업 유치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예산과목 경정 사유, 해당기업 피해 여부
-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지역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산림자원개발 등을 위한 경비로 23,76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조간선도로의 이동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확포장 및 정비사업, 집중호우로 입은 하천복구, 밀레니엄타운내 사유지 매입, 입업 시험·연구포지 조성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지도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중 국비 100%(1,750백만원)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교통관리비**는 청주공항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 및 재정지원 등의 경비로 25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주-북경간 노선 개설에 따른 청주공항 설명회 개최경비와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비가 계상된 것이며
 앞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 저상버스 도입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와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소방관리비**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비로 7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양강 119지역대 신축비, 소방헬기 자동조종장치구입비, 지역별 소방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었음.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헬기자동조정장치는 소방헬기 운용특성상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이외의 장치는 더 필요하지 않은지, 헬기운용 안전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교부금**은 200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징수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 등으로 7,83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예비비**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17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2.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제5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일반세입·세출과 구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개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8,00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세입은 매출액 송금지연에 따른 변상금과 공채매출액이 계상되었으며
 -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용자금의 계상되었음.
 -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는 78,91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세입은 입학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 계상 되었으며.
 - 세출은 수당, 버스임차료 등 대학운영 기본경비와 옥상방수공사, 노후컴퓨터 교체 사업비가 계상되었음.
 - 옥상방수공사 대상인 대학 실습동 건물은 건축된지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로써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공사를 통하여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80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세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및 결산잉여금이 계상 되었으며
 -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군 행정경비 지원 등이 계상 되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6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담금 징수분이 계상 되었으며
 - 세출은 징수금 증가로 인한 시군 교부금 및 반환에 관한 특별법 처리지연에 따라 금년도에 지출이 어려운 반환금이 삭감되어 예비비에

편성되었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6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계상 되었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예산에 기 편성 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이 계상되었음.

3.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이며
- 우리 지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 세입은 금년부터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3,00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내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지원금 재원조성을 위해 도비 출연금이 계상된 것임.
 - 세출은 기금조성 등을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된 것임.